

1996. 10. 18. 개정  
1999. 4월 임시총회에 의해 이사수 개정  
2004. 10. 15. 개정  
2013. 10. 18. 개정  
2015. 10. 16. 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명칭)

대한정형외과학회(이하, 본회)라고 한다.

### 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정형외과학의 진보 및 발전과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기획, 연구, 홍보와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준수,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3 조 (사무소)

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·도에 둘 수 있다.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4 조 (회원)

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 회 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만 3년 이상 준회원으로 등록되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다.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

얻은 자는 이유서를 첨부하고 소정의 회비 및 수속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. 준 회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.
3. 명예회원 :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국제적으로 의학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.
4. 명예회장 : 본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한다.

### 제 5 조 (회원의 권리)

1.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일반적인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.
2.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·의무를 갖는다.

### 제 6 조 (자격상실)

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### 제 7 조 (징계)

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처분 또는 징계 처분(경고, 정권, 제명 등)을 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사 업

### 제 8 조 (정규사업)

본회는 상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정형외과학의 기획, 연구 및 학술강연회 개최 등 정형외과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
2. 정형외과학 분야의 국민보건을 위한 교육, 수련 및 정형외과학 보급을 위한 전시회 등의 개최 사업
3. 정형외과학의 교육,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

4.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사항 및 발전을 위한 사업
5. 기타 본회의 정관 제2조에 명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 9 조 (수시사업)

본회는 전조에 의한 사업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   임원 및 임기

### 제 10 조 (임원)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|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1. 회장 .....    | 1명  |
| 2. 차기회장 .....  | 1명  |
| 3. 이사장 .....   | 1명  |
| 4. 차기이사장 ..... | 1명  |
| 5. 감사 .....    | 2명  |
| 6. 이사 .....    | 31명 |

(이사 22명,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지회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소속 각 1명, 서울 개원의 소속 1명, 보험위원회 이사 1명 및 대외협력위원회 이사 1명, 총무이사 1명)

-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7. 대한의사협회 파견대의원..... | 1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
### 제 11 조 (임원선출)

차기회장,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현회장 및 이사장이 지명한 5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전형위원과 자문위원회의 협의하에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### 제 12 조 (임기)

1. 회장 및 이사장, 총무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, 중임할 수 없다.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는 매년 그 중의 반수를 교체한다.
2.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른다.

### 제 13 조 (회장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시는 이사장이 이를 대행한다.

### 제 14 조 (이사장)

1. 이사장은 회장 및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.
2. 이사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총무이사를 임명한다.
3. 이사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4. 이사장의 유고시 : 춘계학회 이전에 유고된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새로 인준 받으며 춘계학회 이후에 이사장이 유고된 경우는 차기이사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15 조 (이사)

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업무를 수행한다.

### 제 16 조 (감사)

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

### 제 17 조 (자문위원회)

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서 구성한다.

### 제 18 조 (총무이사)

총무이사는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의 기획, 서무 및 회계를 수행한다.

## 제 5 장 기구 및 회의

### 제 19 조 (기구)

본회의 기구는 총회,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위원회로 구분하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, 이사회에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## 제 20 조 (총회소집)

1.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2.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의 개최 1개월 전에, 임시총회는 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 제 21 조 (총회 의결 정족)

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## 제 22 조 (총회 의결 사항)

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1.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
2. 사업 계획
3. 예산, 결산의 승인
4.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
5. 임원(차기회장, 차기이사장, 감사,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)의 선출
6. 기타 중요한 사항

## 제 23 조 (이사회 소집)

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
## 제 24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
1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)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
  - 2) 회원의 가입 및 징계
  - 3)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
  - 4) 총회 및 학술회의 개최
  - 5)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

- 6) 예산 및 결산
  - 7) 지부설치의 인준
  - 8)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
2. 이사회는 제 24조 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, 이사는 필요한 각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#### **제 25 조 (자문위원회)**

자문위원회는 차기회장, 차기이사장, 감사 및 대한의사협회파견 대의원을 총회에 추천하고 회장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
## **제 6 장 재 정**

#### **제 26 조 (회계년도 및 사업년도)**

본회의 회계년도는 임원의 사업년도와 같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# **제 27 조 (경비의 총당)**

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총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.

- 1.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
- 2. 찬조 및 기부금
- 3. 기타 수입금

#### **제 28 조 (결산보고)**

본회의 회장은 총회결산 보고 전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기 내 재무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29 조 (재산의 관리)**

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실한 유가 증권 혹은 신탁에 투자 예치하여 이사장이 이를 보관한다.

### 제 30 조 (정관 개정)

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결의하되,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 31 조 (효력 발생)

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